

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상정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 변경(제16조의2 → 제33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조례 개정 사유는?	○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맞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3호
의결 년월일	2008. 1. 23 (제141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. 10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 변경(제16조의2 → 제33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과 10인 내지 1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중에서 선출”을 “위원 중에서 호선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계국장급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”을 “관계 국장급 공무원,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자문에 의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시장이 부의하는”을 “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시”를 “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”

로 하고, “필요시”를 “필요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에
부의할”을 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하고, “1주일전”을 “1주일 전”
로 한다.

제7조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
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
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 ③위원은 관계국장급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의한다. 1.~3. (생략) 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개최) ①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-----. ② ----- -----위원 중에서 호선-----. ③ -----관계 국장급 공무원,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-----.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-----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개최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정기회의는 <u>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시</u> 개최하고 <u>임시회의는 필요시</u> 수시로 개최한다.</p> <p>③위원회에 <u>부의할</u> 안건은 회의 개최 <u>1주일전</u>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관계공무원</u>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간사)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수당과 여비) <u>위원회 개최시</u>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 -----<u>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</u>----- 필요시-----.</p> <p>③ <u>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</u>----- -----<u>1주일 전</u>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의견의 청취) ----- ----- <u>관계 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간사) ① ----- -----<u>1명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수당과 여비) <u>위원회의 회의에</u>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<u>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</u>」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----- ----- -----.</p>